

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15호
- 나. 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 외 27명
- 다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2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·인증함으로써,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과 재인증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 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안 제9조)

마. 유망 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정함(안 제10조)

바.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제정안의 개요

- 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‘유망 중소기업 인증제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인증사업 현황

-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기술력과 기업우수성, 시장성과 성장성,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“하이서울기업”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2002년 ‘HI-Seoul’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한 “하이서울기업”은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임.

< 연도별 하이서울기업 인증업체 규모 >

(단위 : 개사)

연도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인증업체	11	30	38	45	60	74	90	120	150	170	200	204	196	713	902	104	933	983

- 인증기업에게는 ▶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, ▶글로벌 시장 진출, ▶B2B 비즈니스서비스, ▶정부사업 유치, ▶인증기업간 네트워킹, ▶하이서울 베투얼클러스터¹⁾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.
- 그러나, “하이서울기업 인증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.
- 이에 제정안은 업종, 기업형태,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·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다. 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정의(안 제2조)

- 제정안은 “중소기업”을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”으로 “유망 중소기업”을 “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생산성이 양호하고, 기술·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 시장이 인증한 기업”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.
- 이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.

1) 하이서울기업 위치, 업종, 수출국가 등의 DB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업/기관의 유입 매개체가 되도록 하여 하이서울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

(2) 인증 대상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“최초인증” 과 “재인증” 으로 구분하고 “최초인증 대상” 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관내 중소기업으로 하고, “재인증 대상” 은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관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음.
- 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“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” 과 인증대상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미 인증 받은 우수 중소기업과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인증 받는 기업들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함임.
- 다만, “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 중소기업” 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,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.

(3) 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,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관련 단체, 기관에 인증과 평가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, 인증표시는 인증제도의 가치와 공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며,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(서울산업진흥원, 중소기업진흥원 등)에 위탁함으로써 인증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“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”은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시행되어 지원기관(서울산업진흥원)과 운영기관(하이서울기업협회)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으므로,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모방식의 민간위탁보다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.

< 수정의견 >

제정안	수정의견
제5조(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)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.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,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)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.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, 기관 등에 <u>대행하게 하거나</u> 위탁할 수 있다.

(4)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(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-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의 설치·운영(제6조)과 ▶간사(제7조), ▶의견청취(제8조), ▶수당(제9조)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< “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”의 기능과 구성 >

- 기능
 -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심의
 -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심의
 -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
- 구성(총 9명 이내)
 - 당연직 : 경제일자리기획관,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 - 위촉직 : 시의원,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
 - 간사(위원 정수에 불포함) : 관련 업무 담당 과장
- 임기 : 2년(1회 연임가능)

- 제정안이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인증제도를 실행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위원의 정수가 9명에 불과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위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와 지원정책 등의 정책적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‘정책위원회’와 인증

대상의 선정과 심의를 다루는 ‘실무위원회’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

< 수정의견 >

제정안	수정의견
<p>제6조(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</p> <p>2.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</p> <p><신설></p> <p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</p> <p>2.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,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~ ⑤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(5) 인증의 유효기간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, 평가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할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화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음.
-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, 신규인증 기업과 절차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규인증을 받도록 수정해야 할 것임²⁾.

< 수정의견 >

제정안	수정의견
제10조(인증의 유효기간)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인증기간 만료 <u>이전 또는 이후</u>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.	제10조(인증의 유효기간)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인증기간 만료 <u>이전에</u>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.

(6)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는 인증된 유망 중소기업에게 ▶인증서와 현판 교부, ▶홍보, ▶중소기업육성자금, ▶해외 마케팅, ▶기술개발, ▶역량강화와 브랜드화, ▶인증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등을 우대·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러한 지원책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인증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.

2) “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”에서도 인증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- 현재,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증기업의 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, R&D 사업 우대, 세제감면, 세무조사 유예, 특허 연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,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우대 등 서울시 인증 사업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
< 주요 중소기업 인증제도 비교 >

구분	중소벤처기업부	경기도	서울산업진흥원
주요 인증제도	벤처, 이노비즈, 메인비즈	경기도 유망 중소기업	하이서울기업
주요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세제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세/소득세/취득세/재산세 감면 (50~75%) · 정기세무조사/관세조사 유예 등 ◦ 금융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감면 · 신보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·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할인 ◦ 기술/판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기벤처부, 특허청 등 지원 사업 가점 ·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· 조달청 물품구매 작위참사 우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프로모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서 및 현판 교부 ◦ 금융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용보증재단 평가 가점 및 금리 우대 ◦ 기술/판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도, GBSA, 테크노파크 등 21개 사업 가점 · 경부연회 무역금융자 가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프로모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서 및 현판 교부(시정명의) ◦ 기술/판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· 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· 시 기술개발 지원사업 우대

- 따라서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는
 - ▶ 공공기관 우선구매, ▶ 정책펀드 조성 과 특화 R&D 지원, ▶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감면, ▶ 지방세 감면³⁾ 등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3) 다만, 지방세의 감면을 위해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개정이 필요함.

(7) 인증의 취소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는 인증기업이 ▶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, ▶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, ▶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, ▶폐업, 부도, 영업 중단 등의 경우, ▶본사,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, “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는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됨.
- 한편, 「행정절차법」은 행정청이 자격 박탈 등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개정안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< 수정의견 >

제정안	수정의견
<p>제12조(인증의 취소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인증의 취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</u></p>

	<u>기업에게 사전통보 하고,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</u>
--	--

(8) 지도·점검 등(안 제13조)

- 안 제13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,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자료제출과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.
- 민간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·점검은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한편, 제정안에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“하이서울기업”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부칙에 추가하여 인증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< 수정의견 >

제정안	수정의견
부칙	부칙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)</u>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“하이서울</p>

	<u>기업”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.</u>
--	---

라. 종합의견

-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·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·정책적 의의가 있음.
- 또한, 기존 “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수 있는 기반이 되는 바, 향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법·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.
- 다만,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대행 근거 마련, 정책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의 역할 분리, 재인증 요건 강화, 인증취소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입법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- 한편, 「중소기업기본법」⁴⁾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지원사업이 충분한 입법

4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5(협의 및 조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,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.
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 범 준	02-2180-8058